

의사 및 표현의 자유의 촉진과 보장 특별보고관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¹

문서번호: OL KOR 4/2019

2019년 11월 28일

귀하(Excellency),

인권이사회 결의안 34/18 및 40/10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서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귀하께 연락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전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에 관해 의견을 표명(communication KOR 2/2018)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비범죄화 결정에 대해 환영(communication KOR 4/2018)을 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비공식 영문 번역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법 체제 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상, 양심 및 신념의 자유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 사전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 2 조에 따라 귀 정부는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도입하고, 국내법체계가 규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도입할 일반적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 법률(안)의 주요 요소

대체복무제 법률(안)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당해 법률(안)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에 따라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법률(안) 제 1 조와 제 2 조 제 1 항 참고)

제 2 장

법률(안) 제 2 장은 현역 군복무에서 대체복무로 편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대체복무는 해당 개인의 신청을 요한다.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판단을 위해, 법률(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제 7 조). 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승인 혹은 불승인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 13 조).

제 3 장

법률(안) 제 3 장은 심사위원회를 규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교정시설, 구금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의 부속 사무소 또는 공공 혹은 공익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에서 진행된다(제 17 조). 대체복무 기간은 36 개월로 정해져 있다(제 19 조).

해당 법은 나아가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복무기간의 연장 및 경고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다(제 24 조).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편입의 취소 및 현역복무로의 전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 4 장

제 4 장은 대체복무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신청서나 소견서를 위조하는 행위(제 27 조)와 위조문서를 발급하는 행위(제 28 조)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부칙

법(안)의 부칙은 특히 병역법 제 88 조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ICCPR)에서 규정하는 신념의 자유(제 18 조 제 1 항), 의견의 자유(제 19 조 제 1 항) 및 표현의 자유(제 19 조 제 2 항)에 따라 보호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따라 설치되어 규약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이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 법적 의무의 본질에 관한 일반논평[이하 ‘일반논평’] 33 호, 단락 13)¹. 따라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erits) [2010] ICJ Rep 639 단락 66 참고). 이전 서신에서 이미 표명한바와 같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에 대한 권리를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및 일반논평 제 22 호(general comment no. 22)를 통해 인정하였다. 관련하여, 정민규 외 대 대한민국(Jeong et al v Republic of Korea) 개인통보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무적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강제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원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대체복무는 군사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의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 대체복무는 징벌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합치되어야 한다.”

¹ CCPR/C/GC/33 para. 13

Atasoy and Sartuk v Turkey 개인통보 건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절대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규약 제 18 조 제 3 항에 따른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tasoy and Sartuk v Turkey 단락 10.5 참고). 신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의견의 자유 역시 절대적이다 (일반논평 34 호, 단락 9-10 참고)².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 19 조 제 3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즉, 제한은 적법성, 정당한 목적, 불가피성 및 비례성(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자유권규약의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서 규약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일반적 의무는 국가가 “어떠한 종류의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 이 일반 의무는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 종교, ... 또는 기타의 의견, ...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 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제 26 조의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보충된다.

마지막으로 자유권규약 제 2 조 제 3 항은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 피해자를 위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효과적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의무를 수반한다. 배상을 넘어서, 이는 ”공적인 사죄와 공적 기록, 재발방지의 보장과 관련 법률 및 관행의 변경 뿐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등의 손해회복조치, 원상회복과 손해전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반논평 31 호, 단락 16)⁴.

법률(안)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상정된 법률(안)은 국제법 하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의 양립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우려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법률(안)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를 언급한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은 헌법 제 19 조를 해석함에 있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 조 제 1 항과 제 19 조 제 1 항에 의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국내법과의 일치가 국제법과의 불일치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7 조⁵와 이를 재확인한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31 호 단락 4⁶ 참고).

더 나아가, 헌법 제 19 조를 참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몇몇 요소들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비록 국내법에 충돌해소를 위한 원칙들(예를 들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법률(안)이 적용될 경우 국제인권기준과의 영구적인 긴장이 성문화되고 제도화될 것에 대한 실제적 우려가 있다.

² CCPR/C/GC/34 para 9-10

³ CCPR/C/21/Rev.1/Add.13 para 16

⁴ CCPR/C/21/Rev.1/Add.13 para 16

⁵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icle 27 3

⁶ CCPR/C/21/Rev.1/Add. 13 para. 4

절차적 문제

첫째로, 사용된 용어에 우려를 표한다. 법률(안) 그 어디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법률(안) 제 5 조). 그러므로 법률(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로, 대체복무제로의 편입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안) 제 13 조 제 2 항은 대체역[심사]위원회(Alternative Service Committee)가 신청자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기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은 추가적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전에 지적되었듯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정립한 기준은 [신청인이] 신념을 진실되게 가지고 있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대체역[심사]위원회에게 당사자의 진술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법률(안)은 30 세 이상을 대체복무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부칙 제 3 조 예외사항). 이런 구분을 만들어야 할 국내법적 근거, 예를 들어 30 세 이상은 병역에서 면제된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대체복무 자격으로서 연령 조건을 두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위배될 수 있다.

넷째로, 재신청을 금지하는 제 6 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우려지점이 있다. 제 25 조를 언급하는 법률(안)? 제 6 조 제 3 항과 관련한 우려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라.⁷ 제 6 조 제 1 항은 신청을 철회한 적 있는 자의 신청 재접수를 불허한다. 신청자에게는 신청을 철회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그리고 이미 수없이 입증된 바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낙인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봉사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대체복무는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여야하고 인권 존중의 정신에 합치되어야 한다. 교정시설, 구치소, 교정시설 및 구치소 부속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공동체에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은 인정되나, 구금시설만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지가 수감상태에서 감옥 내 대체복무 수행으로 변경될 뿐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아가 제 17 조 제 2 항 1 목이 무기의 사용은 제외하고 있으나 타인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은 제외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대체복무가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가 대체복무요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제 17 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⁷ 원문: For concerns relating to Article 6 (3) of the draft bill, which makes reference to Article 25, see below.

제 1 항 대체복무요원은 공익을 위한 활동에 복무한다. 이런 활동은 무기의 사용이나 관리, 무력의 사용, 혹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경우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대체복무 기관 및 장소를 포함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는 요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항 대체복무요원을 배치 받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처벌적 요소

법률(안)은 몇 가지 영역에서 처벌적 요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닌 국가의무에 위배된다 하겠다.

첫째로 법률(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 개월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군복무보다 길며, 이러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자유권규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신념에 기초한 모든 불평등한 처우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권규약 제 26 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 18 조 제 1 항을 침해하는 징벌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대체복무제도의 편입 취소에 관한 법률(안) 제 25 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려 지점이 있다. 편입 취소를 규정하는 제 25 조 제 1 항의 7 가지 상황 중에서 문제가 없는 내용은 7 목의 자발적 취소 한 가지 뿐이다. 나머지 1~6 목은 신청인이 적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목은 허위문서 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편입이 결정된 경우에 대한 취소 조항이다.

개인이 문서 위조를 포함하여 절차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해당 개인이 적법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안) 제 27 조의 처벌조항은 최소 1 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여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과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 2 목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련 현장에서 8 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편입 취소 조항이다.

개인이 복무 의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해당 당사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 징계조치와 같이, 편입 취소가 아닌 적절한 대안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편입 취소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대응으로 보인다.

- 3 목은복무연장에 처하는 경고를 4 회 이상 받을 경우의 편입 취소 조항이다. 법률(안) 제 24 조 제 2 항에 따르면, 경고는 “다른 사람의 복무를 방해하거나 제 3 자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혹은 해당자가 “정치적 활동에 연루”된 경우 발부된다.

법률(안) 제 24 조 제 2 항이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참정권마저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는 자유권규약 제 19 조 제 3 항,

제 21 조 및 제 25 조의 조건과 합치되어야 한다. 즉, 해당 조항은 법률에 합치하여야 하고, 적법한 목적을 가지며, 불가피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첫째로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못하게 막는 조치는 적법성 조건과 관련한 우려를 야기하며,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적법성 조건은 어떤 행위가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예견가능성 의무를 수반한다. 현재의 법률(안)으로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참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필요성 및 비례의 원칙 요건에 관련하여, 정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제한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제한은 대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법(안)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예견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발생한다. 대체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복무를 방해하거나 제 3 자의 근무 태만을 선동”할 때 취해지는 경고조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조항이 단체노동쟁의 과정에서의 파업권을 침해하는가?

마지막으로, 다른 취소사유들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법률(안) 제 24 조 제 2 항에 따른 경고는 한 개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인정하는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그런 요원에 대한 편입취소 결정은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제 24 조 4 목은 형사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대한 편입 취소 조항이다.

문제의 형사범죄는 해당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입취소는 해당인이 대체복무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반영한 처사라기 보다는 가중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 제 24 조 5 목과 6 목은 복무 요건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혹은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된 것이다.

전항들에 대한 의견과 같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개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편입취소 결정과는 무관해야 한다.

요약하면, 언급된 사유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할 정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편입 자동취소는 명백하게 자유권규약 제 18 조 제 1 항에 배치된다.

과거 및 현재 침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부재

우리는 자유권규약 제 18 조 및 제 19 조에 대한 과거 및 현재진행형의 침해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에 적절한 구제조치가 부재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제 2 조 제 3 항의 의무에 따라 침해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제공해야 함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법률(안) 부칙에서 제 2 조는 기존 병역법 제 88 조⁶위반에 따라 형이 선고 및 확정된 개인들에 대해

선고유예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체복무자격에 부합할 경우, 이미 집행된 형의 기간은 대체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선고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 및 선고가 과거에도 지금도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유죄선고의 모든 효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나아가 형법 위반으로 인한 수감 기간과 대체복무 잔여 기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대체복무제의 처벌적 성격을 더욱 드러낸다. 형사 처벌에 의한 복역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여는 결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칙 제 2 조에서 형사처벌과 대체복무의 본질적 차이가 강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부칙 제 2 조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병역거부자들이 기소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정부 당국의 행위는 당사자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개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의 기간을 참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강조한 내용에 더하여, 당사국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국가에 의한 손해회복, 보상 및 정당한 변제를 통해 배상의 형태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별개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법률(안)이 채택되어도 당사국은 이 별도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별개의 자유권규약 위반이 된다.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15 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채택한 권고안을 반복한다. 해당 권고는 당사국에 "군복무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범죄기록이 삭제되고 그들이 적절한 배상을 제공받고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라"(2015 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 4 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단락 45 참고)⁸고 촉구하였다.

끝으로,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일반적 의무에 따라 차별 없이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 교육적 그리고 다른 적절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 공무원과 국가의 대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동 규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논평 31 호 단락 7 참고)⁹ 따라서 당사국은 그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연관된 부정적 낙인에 대항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우리가 맡은 모든 사안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에 아래의 사안들에 대하여 귀하의 견해를 제공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어떠한 추가 정보라도 관련된 것이 있다면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안)이 국제인권법 하에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의무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체복무제법의 채택을 넘어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효과적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⁸ CCPR/C/KOR/CO/4 para. 45

⁹ CCPR/C/21/Rev.1/Add. 13 para.7

계류 중인 혹은 최근 채택된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인 본 서신(communication)과 귀 정부로부터 수신된 모든 답변은 서신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48 시간 이내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한 이후에 인권이사회 제출을 위한 일반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공될 것입니다.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다윗 케이(David Kaye)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촉진과 보장 특별보고관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